

유족 대표자 선정서

※ 아래의 유족 대표자 선정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유족 대표자	성명(한자)	생년월일
	주소	(전화번호:)
	제2연평해전 전사자와의 관계 의	

본인들은 「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들의 보상금의 신청 및 수령([] 각자 수령 [] 대표자 전액 수령)에 관한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.

위 임 인		
1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
	주소	대표자와의 관계 의
2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
	주소	대표자와의 관계 의
3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
	주소	대표자와의 관계 의
4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
	주소	대표자와의 관계 의
5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
	주소	대표자와의 관계 의
첨부서류	위임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	

유족 대표자 선정방법

- 유족 중 보상금 지급신청의 순위는 「민법」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.
- 「민법」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(「민법」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).
 - 직계비속(자녀·손자녀)이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)보다 앞선 순위가 됩니다.
 -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앞선 순위가 됩니다(자녀가 손자녀보다, 부모가 조부모보다 앞선 순위가 됩니다).
 -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이며,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.
 - 직계비속,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,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. 이 경우 같은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안에서는 최근친이 앞선 순위가 됩니다.
-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같은 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같은 순위자(미성년자를 제외합니다)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을 신청·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위임인이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, 위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.